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연구개발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와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의 범위를 삭제하고,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절차, 규제 신속확인 요청 절차와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안 제19조의4 신설)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특례 지정 거부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실증특례 계획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규제에 신속확인 요청(안 제19조의18 신설)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신속확인 요청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임시허가의 신청(안 제19조의19 신설)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임시허가의 대상인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내용, 사업범위,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1.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임시허가”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실증특례”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로 한다.

제9조의5의 제목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를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실증특례의 대상”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을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실증특례 신청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증특례 신청인”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증특례 신청자”를 각각 “실증특례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4까지를 각각 제19조의10부터 제19조의17까지로 하고,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로 하며,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제1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중전의 제19조의4)제2항제4호 중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책임보험”으로, “제19조의10제2항”을 “제19조의1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별도의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배상방안”으로 한다.

제19조의6(중전의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6항제4호”를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증특례 신청자”를 “실증특례 신청인”으로 한다.

제19조의7(중전의 제1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8항”을 “법 제16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8 및 제1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8(실증특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실증특례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1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서류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

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

나.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10(중전의 제19조의7)제2항제2호 중 “책임보험”을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으로 한다.

제19조의13(중전의 제19조의10)의 제목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

정을 받은 자로서 책임보험”을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실증 전까지”를 “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으로, “법 제16조의2제4항”을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증특례”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로 한다.

제19조의14(중전의 제19조의11)의 제목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책임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로, “실증 전까지”를 “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로, “배상방안”을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9조의10제5항”을 “제19조의13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15(중전의 제19조의12)의 제목 “(실증특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18부터 제19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

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서”라 한다)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
자료

4.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
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
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
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
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16조의7제11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9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임시허가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19조의1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7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9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

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확인
 4.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확인
 5.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확인
 6.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확인
 7.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확인
 8.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확인
 9.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확인
 10.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확인
 11.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 확인 및 결과 통보
 12.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확인
 13.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확인
 14.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확인
- 제42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9조의10”을 “제19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의11”을 “제19조의14”로 한다.
- 별표 9 제2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카목 및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
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	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아. 법 제16조의7제1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7호	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자.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	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차. 법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판매·이용 또는 제공을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백50만원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7백만원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임시허가-----		
② ~ ⑥ (생략)		-----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 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⑧ · ⑨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 기피 · 회피) (생략)		⑦ -----		
제10조(의견청취) ① · ② (생략)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 기피 · 회피)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 · ② (현행과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2. (생략)

3.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② (생략)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교

같음)

③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

-----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삭제>

육시설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
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을 이전(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로 한정
한다)받아 해당 기술을 활용
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중소기업

2.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영업소, 연구
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기업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
소기업

③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
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

<삭 제>

③ 법 제16조의2제1항-----

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
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
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가. ~ 다. (생략)

라. 실증특례 신청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 4. (생략)

④·⑤ (생략)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
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
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
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실증특례 신청인-----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

----- 실증특례 신
청인-----.

② -----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생략)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신청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신청자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4. ~ 8. (생략)

<신설>

<신설>

----- 실증특례 신청인-----

-----.

1. (현행과 같음)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제1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제19조의4(실증특례의 유효기간)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0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배상방안(이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책임보험-----

----- 제19조의13제2항-----

5. -----
----- 배상방안----

“배상방안”이라 한다)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 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 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5</u>(실증특례의 세부 심사 기준) <u>법 제16조의2제6항제4호</u> 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제19조의6</u>(실증특례의 세부 심사 기준) <u>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u>	2. <u>실증특례 신청인</u>-----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6</u>(실증특례의 지정을 위 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u>법 제16조의2제8항</u>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u>제19조의7</u>(실증특례의 지정을 위 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u>법 제16조의2제9항</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9조의8</u>(실증특례 변경 신청 등) ① <u>법 제16조의2제10항</u>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

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실증특례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 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1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

<신 설>

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
재지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2
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
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
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서류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
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
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
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
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
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

나.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u>로 고려해야 한다.</u> <u>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u> <u>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u> <u>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u> <u>해 등의 발생 여부</u> <u>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u> <u>과 및 기대효과</u> <u>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u> <u>등과 조정 여부</u> <u>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u> <u>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u> <u>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u>사항</u>
<u>제19조의7</u>(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 독 등) ① (생 략)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생 략) <u>책임보험</u>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u>제19조의10</u>(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과 같음) <u>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u> <u>책임보험</u> ----- --
<u>제19조의8</u> · <u>제19조의9</u> (생 략) <u>제19조의10</u>(실증특례의 지정에 따	<u>제19조의11</u> · <u>제19조의12</u> (현행 제 19조의8 및 제19조의9와 같음) <u>제19조의13</u>(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른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 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실증 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⑥ (생략)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법 제

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

----- 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

② -----
-----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4(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16조의3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u>책임보험</u>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u>지정</u>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u>실증 전까지</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u>배상방안</u>을 마련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u>제19조의10 제5항</u>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u>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u> (생략) <u>제19조의13·제19조의14</u> (생략) <u><신설></u>	<u>책임보험</u>----- ----- ----- <u>지정 또는 임시허가</u>를----- ----- ----- <u>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u> ----- <u>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② ----- ----- <u>제19조의13 제5항</u>-----. -----. <u>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u> (현행 제19조의12와 같음) <u>제19조의16·제19조의17</u> (현행 제19조의13 및 제19조의14와 같음) <u>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u> ① <u>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u>
--	---

<신 설>

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
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
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
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요
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요청을 받
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
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
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
의 장에게 신속확인 요청서 사
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
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
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
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보내
야 한다.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
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
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
서”라 한다)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 신청인의 재정
적·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류

3.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
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
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
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16조의7제11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

<신 설>

를 신청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9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 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신 설>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

<신 설>

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
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 신청인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
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
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
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
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임시허가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
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

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
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
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
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
19조의1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
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

<신 설>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7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 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 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9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

<신 설>

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신 설>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 37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생략)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

-----.

1. (현행과 같음)
2.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3. ~ 7. (생략)

제4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2. (생략)

2의2.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업무 중 실증특례 신청서의 접수·확인, 통계수집 등 지원업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라 한다)

3. ~ 7. (현행과 같음)

제42조(업무의 위탁)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확인

4.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확인

5.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확인

6.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확인

7.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확인

8.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u><신 설></u>	<u>확인</u>
	9.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 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 는 자료의 접수·확인
<u><신 설></u>	10.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확인
<u><신 설></u>	11.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확인 및 결과 통보
<u><신 설></u>	12.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확인
<u><신 설></u>	13.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의 접수·확인
<u><신 설></u>	14.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확인
<u><신 설></u>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10에 따른 책임보험 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의11에 따른 배상방안 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생략) ②·③ (생략)	-----. 1. 제19조의13----- ----- 2. 제19조의14-----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43